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0
----------	-----

2023. 6. 23.(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9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일 의원)

가. 제안사유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 사회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청소년지도자 적정 보수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240여 명이 활동 중임.
-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 유형별로 여성가족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놓여 있음.
- 청소년지도자의 낮은 처우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며,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처우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는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청소년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도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상 문제가 없음.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사한 계획의 중복 수립이나 유사한 내용의 중복 명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모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보수 체계 마련에 관한 규정임.

-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유형별로 보수 체계가 달라 도내 청소년지도자들마다 다른 처우에 놓여 있고,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월 10만원에 그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정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본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도지사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근무 환경 개선 사업 등은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이라 보여지며, 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신설 2015. 2. 3.)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책무를 강화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체계 마련)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 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 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 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0. 5. 19.>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타 사회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지도자 처우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도내 청소년지도자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7조(보수 체계 마련)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2027년 (5년간)
-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급
 - 2017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중이며, 현재 지급액 기준으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1,492,000천원

-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실시
 - 20,000천원 × 1식 × 2회 = 40,000천원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급

- 100천원 × 242명 × 12월 × 5년 = 1,452,000천원 * 2023년 예산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실시 : 도비 100%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급 : 도비 40%, 시군비 60%(청주시 7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10,400	290,400	290,400	310,400	290,400	1,492,000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20,000			20,000		40,000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290,400	290,400	290,400	290,400	290,400	1,452,000
재원 조달		290,400	310,400	290,400	290,400	310,400	1,49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9,800	129,800	109,800	109,800	129,800	589,000
	지방세	109,800	129,800	109,800	109,800	129,800	589,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180,600	180,600	180,600	180,600	180,600	903,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